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61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임미애 · 권향엽 · 윤준병  
전종덕 · 어기구 · 주철현  
이연희 · 이원택 · 윤종오  
이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